

# 우수 약용작물 생산 · 유통대책

2005. 3



문 제 열 사무관 채소특작과

▶▶ 5월호에 이어서

### 3.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는 차별화된 유통체계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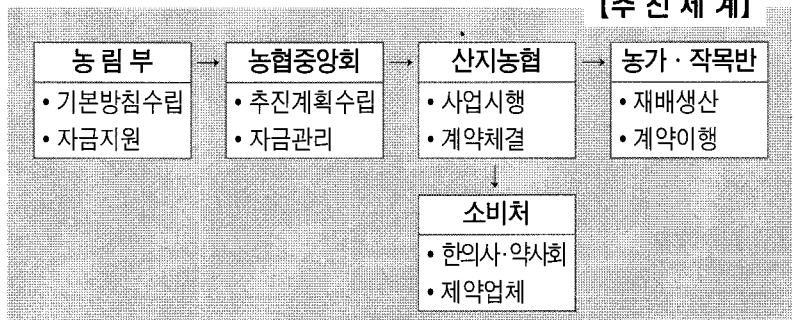
#### □ 약용작물 생산 · 유통계열화사업 추진

- 정부와 농협이 공동자금을 조성하여 약용작물 계열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약용작물의 안정적 재배 및 국산한약재 소비확대유도
- 지역농협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계약재배수매 및 가공판매사업 실시
- 계약재배사업자금조성('06년) : 정부농안기금80%, 농협20% 무이자자금
- 재배이력관리기재 의무화 조건으로 계약, 농약안전성 검사후 합격품 수매
- 농협이 인증하는 국산한약재를 사용하는 한의원, 약국에 농협 인증

- 농협중앙회, 산지농협, 한의사회 등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
- 계약재배 품목별 수요량 및 가격결정, 재배가능면적 파악 및 계약

- 사 등 기초자료를 종합수집·분석하여 '06년 농협계약수매 사업준비
- '06년 농협계약재배 및 수매사업 본격추진

#### 【추진 체계】



#### 【추진 계획】

- '05년 농협매취사업으로 시범운영
- 영주, 평은, 태백, 정선, 산동 등 5개 농협 시범운영
- 조합별 관내 재배면적조사, 사업매취능력, 향후 재배의향조

- 재배농가신청을 받아 재배지 검사, 농가와 계약체결(계약금 지급)
- 계약농가 재배이력관리(생육기, 수확기, 출하기) 및 안전성 검사
- 농협에서 수매, 공동브랜드(한산에)로 소포장 가공판매

**□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자조금 단체로 육성**

- 품목별 주산지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품목별 생산 조직화
  - 당귀/강원1,081ha(전국72% 점유), 황기/강원437ha(51%)
  - 천궁/경북327ha(89%), 오미자/경북100ha(22%), 구기자/충남161ha(73%)
- 생산자단체(품목별 조직)가 자발적으로 판로확대, 소비홍보, 안전성 관리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도모
- 연차적 목표 : '05)당귀 → '06)황기 → '07)천궁, 오미자, 구기자
  -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서 자조금을 조성하면 매칭펀드(Matching Fund) 방식으로 자조금 사업지원(생산자 조직50%, 국고50%로 자금조성)

**□ 농협하나로클럽에 국산 한약재 전문취급 한의원 개설**

- 국산 한약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의원을 농협하나로클럽에 개설함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국산한약재 소비확대
- 농협 품질인증 국산 한약재와 외국산과 품질·가격 차별화 유도
- '05년에 양재 농협하나로클럽에 시범도입 운영
  - 사업평가 등을 거쳐 창동 등 전국 16개 하나로클럽으로 확대추진

※ 현재 입점 협력 한의원(동국대 한방병원 등) 선정 협의 중

**□ 한의원에 한약재 직거래 사업추진**

- 농협약용작물협의회와 한의원간 한약재 직거래 사업추진으로 국산한약재 眞價확보
  - (사)우리한약재되살리기운동본부와 연계
- 약용작물전국협의회 공동브랜드(한산에)로 소포장 표기 공급
- 농협과 (사)우리한약재되살리기운동본부가 공동명의로「농협 공급 한약재 사용 한의원」표시 추진
  - 농협공급 한약재명을 분명히 표시하여 소비자 혼란 방지

**□ 판로다양화, 브랜드화 등 소비촉진홍보강화**

- 농협, 한국생약협회, 소비자(한의원 등) 주관 인터넷 전자상거래 구축확대 및 활성화 유도
  - 국산한약재가 차별화 될 수 있는 전문사이트로 운영(경매, 소매)
  - 한국생약협회 e-Marketplace에 GAP생산 약용작물 특별코너개설
  - 한의유통사업단, 국순당 등 대량 수요처와 직거래
- 농협·생약협회 등 생산자 단체의 직판장 활성화
  - 농협유통센터 : '04) 5개소 → '05) 7개소 → '06) 10개소 → '10) 16개소

- 한국생약협회판매점포 : 212개소
- 우수 한약재 특판행사 실시
- 브랜드화 : 다양한 브랜드는 소비자를 혼란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자 단체의 브랜드를 통합하도록 유도
  - 단계적으로 GAP 인증생산확대
  - 브랜드화 약용작물을 대상으로 생산자 실명제, 리콜제 도입
- 농협 약용작물 공동브랜드「한산에」홍보강화
  - 「한산에」상품에 대해 수도권 하나로 클럽 연합판촉 행사실시
  - 농협 공동브랜드 「한산에」상표 등록 추진
- 소비자에 다가서는 범정부적 홍보체계 구축
  -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약용작물 정보를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게재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“국산약용작물” 생산 및 유통정보 제공
  - 품질보증현황, 브랜드현황, 유통정보 등 기본정보 제공
  - 약용작물을 이용한 음식식품, 건강음식조리방법 등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다양한 정보제공
- 농림부, 생산자 단체가 연계된 국산약용작물 홍보 활성화
  - GAP사업과 연계한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 등 후원

#### 4. 지역 Cluster 사업방식으로 약 용작물 생산·가공·유통기반 조성

##### □ 지역 Cluster 개념

- 일정지역에 특화된 약용작물의 생산, 가공, 유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産·學·官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고용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약용작물산업을 혁신

##### [지원 방향]

- 우수약용작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농업인이 선택하는 Cluster사업 공모, 전문가 등의 타당성 검토후 Package형으로 체계적 지원
  - 클러스터 사업예산과 기존의 관련 농림사업을 연계지원
- 예산집행은 농산업 클러스터사업단의 결정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되되, 특별한 경우는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이 직접집행
- 성공가능성과 자발적 노력을 최우선 조건으로 혁신활동 및 공동사업을 중점지원
  - 예비사업 지원(1년) → 본사업 지원(3년) → 평가후 추가지원

#### 5. 한약재 유통관리제도 개선

##### □ 원산지 표시 및 단속강화

- 농산물시장(약령시장)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
  - 정기적으로 일제단속 실시
-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 원산지

#### [단계별 육성전략]

| 구분   | 추진목표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|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예비사업 | • 구성 주체간 상호연관관계 강화 | • 클러스터 사업단 구성 및 기능강화<br>• 정보, 지식의공유 및 확산체계구축 |   |
| 본사업  | 1단계                | •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학습프로그램을 통한 주체의 혁신역량제고<br>• 지역 고유브랜드 개발(연합브랜드)<br>• 상품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능력제고            |
|      | 2단계                | •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지역조건을 고려한 2~3차산업 발굴 및 유지<br>• 클러스터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혁신 시너지 제고<br>• 고부가가치 생명산업과 연계(벤처창업) |

##### 단속추진

- 농림부의 단속권한이 없는 한방약국, 병원, 한약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실시

##### □ 원산지 표시 위반관련 처벌강화

-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원산지 표시위반 형량상향 추진
  - 瓶 5년이하징역, 5천만원이하 벌금 → 7년이하징역, 1억원이하 벌금
- 보건복지부에 약사법 개정 협조 요청
  - 瓶 약사법에 원산지 표시위반의 경우 포괄적 200만원이하벌금
- ※ 원산지 표시단속의 실효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벌칙규정 강화 개정

##### □ 수입한약재관리 효율화를 위한

##### HSK품목분류 세분화

- 재정경제부와 협의 : 현재 기타품목으로 되어 있는 한약재중 농가가 많이 재배하는 품목을 대상으

##### 로 우선 세분화

- 수급조절품목 18개중 두층만 분류되어 있음

##### □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개선

- 수급조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수급조절품목 단계적 축소
  - 농업인,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방안 수립
  - 수급조절제도 축소에 대비한 발직불제 도입 등 농가소득 안정 대책 추진
- 식품으로 수입되어 한약재로 유통되는 사례 방지대책 강구

#### IV. 행정사항 및 사업추진 로드맵

##### 1. 행정사항

##### □ 기관·단체별 소관 업무별 세부

- 추진계획 수립·시행(05. 3월~)
- 농림부
  - 우수 약용작물 생산·유통 종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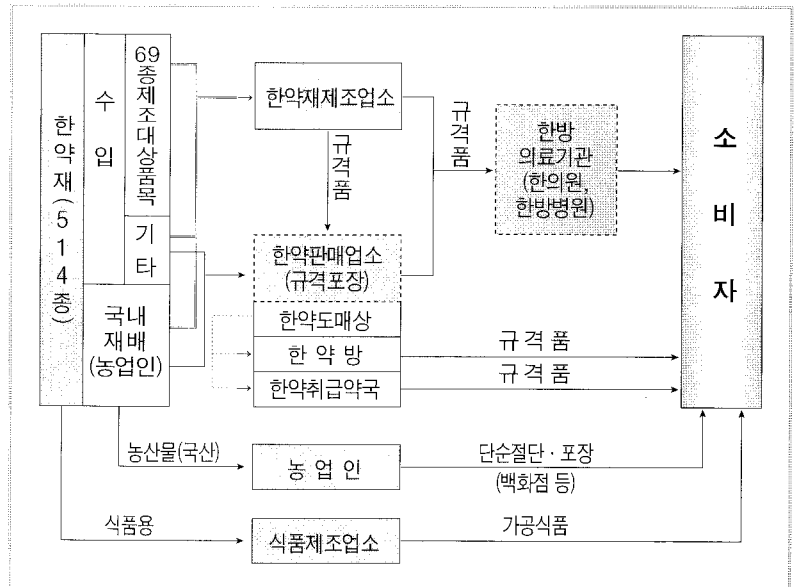
대책수립 및 총괄추진

- 약용작물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, 수급조절위원회 등 제도개선
- 지방자치단체
  - 지역별 약용작물산업 발전대책 수립 및 추진
  - 지역Cluster 사업방식으로 약용작물 생산·가공·유통등 기반 조성지원방안강구
- 농촌진흥청
  - 약용작물 유전자원보존, 품종육성, 연구기능강화
  - 표준재배기술개발보급, 기능성 제품개발
  -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
- 농산물품질관리원
  - GAP사업운영, 농약안전성조사 및 교육
  - 약용작물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
- 농협중앙회
  - 자조금단체육성, 생산·유통계열화사업 등 직거래 기반조성
  - 농협 하나로클럽내 한의원 입점 추진 등 판매활성화
  - 통합공동브랜드(한산에)추진 및 홍보강화
- (사)한국생약협회
  - GAP생산확대 및 판로 활성화 대책 강구

2. 사업추진 로드맵

| 사업별  | 연도별 추진목표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주관 (협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 | 04.기준               | '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10                 |  |
| <b>&lt;개발연구강화&gt;</b><br>• 유전자원보존<br>• 품종육성<br>• 표준재배기술보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40종<br>40품종<br>5품목 | 700<br>45<br>10                | 1,000<br>54<br>15   | 농진청<br>농진청<br>농진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&lt;품질안전관리&gt;</b><br>•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<br>• GAP생산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종<br>8품목<br>(35농가) | 9<br>13<br>(200)               | 18<br>45<br>(1,000) | 농진청<br>농관원<br>(생약협회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&lt;유통체계구축&gt;</b><br>• 자조금단체육성<br>• 생산·유통계열화사업<br>• 하나로클럽, 한의원개설<br>• "한산에" 공동브랜드 등록 | -<br>-<br>-<br>-    | 1개(당귀)<br>5개농협<br>1개(양재)<br>1개 | 5<br>20개농협<br>16개   | 농협<br>농협<br>농협<br>농협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&lt;지역Cluster·특화사업&gt;</b><br>• 생산·가공·유통단지조성  | -    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 | 농림부<br>(자치단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&lt;유통관리제도개선&gt;</b><br>•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<br>• 한약재 HSK품목 세분화<br>• 수급조절제도 개선              | 수시<br>-<br>-        | 정기<br>방안마련<br>방안마련             | 정기<br>개선<br>개선      | 농관원<br>(식약청)<br>농림부<br>(재경부)<br>농림부<br>(복지부) |

[참고 3] 약용작물(한약재) 유통경로



[참고 1] p.

[참고 2] p.

**[참고 1] 2004년 약용작물 생산현황**

(단위 : ha, kg/10a, 톤)

| 구분  | 2004년  |       |       |        | 2003년  |         |       |        |
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    | 전체면적   | 수확면적  | 단수    | 생산량    | 전체면적   | 수확면적    | 단수    | 생산량    |
| 강 활 | 132    | 125   | 257   | 320    | 136    | 131     | 265   | 346    |
| 구기자 | 179    | 179   | 254   | 453    | 219    | 219     | 231   | 504    |
| 길 경 | 534    | 384   | 767   | 2,943  | 590    | 502     | 718   | 3,604  |
| 결명자 | 14     | 13    | 69    | 9      | 9      | 9       | 140   | 13     |
| 당 귀 | 1,042  | 1,023 | 344   | 3,523  | 1,081  | 1,062   | 315   | 3,342  |
| 두 총 | 585    | 286   | 312   | 892    | 608    | 345     | 396   | 1,368  |
| 독 활 | 361    | 192   | 539   | 1,034  | 467    | 442     | 478   | 2,114  |
| 만 삼 | 8      | 8     | 213   | 16     | 4      | 4       | 438   | 17     |
| 맥문동 | 60     | 60    | 425   | 253    | 62     | 61      | 488   | 298    |
| 목 단 | 5      | 4     | 369   | 14     | 3      | 2       | 839   | 19     |
| 방 풍 | 41     | 30    | 354   | 108    | 38     | 37      | 408   | 152    |
| 백 지 | 35     | 31    | 455   | 141    | 30     | 30      | 839   | 143    |
| 백 출 | 0.6    | 0.3   | 800   | 2.4    | 0.5    | 0.4     | 475   | 2      |
| 사 삼 | 2,579  | 1,700 | 556   | 9,446  | 2,438  | 2,037   | 464   | 9,453  |
| 산수유 | 368    | 311   | 151   | 469    | 370    | 273     | 151   | 412    |
| 산 약 | 433    | 431   | 873   | 3,764  | 449    | 449     | 961   | 4,314  |
| 시 호 | 46     | 38    | 163   | 62     | 37     | 30      | 152   | 45     |
| 의이인 | 329    | 326   | 238   | 777    | 244    | 243     | 238   | 580    |
| 오미자 | 451    | 275   | 440   | 1,209  | 452    | 281     | 192   | 541    |
| 작 약 | 158    | 91    | 783   | 713    | 170    | 112     | 617   | 690    |
| 지 황 | 57     | 58    | 749   | 432    | 65     | 65      | 694   | 448    |
| 지 모 | 0.3    | 0.0   | -     | 0.0    | 0.5    | 0.3     | 233   | 0.7    |
| 치 자 | 66     | 64    | 211   | 135    | 52     | 50      | 311   | 157    |
| 천 마 | 38     | 32    | 2,310 | 742    | 27     | 25      | 1,596 | 404    |
| 천 궁 | 406    | 398   | 585   | 2,327  | 367    | 364     | 613   | 2,234  |
| 택 사 | 170    | 170   | 324   | 551    | 136    | 136     | 187   | 254    |
| 백수오 | 121    | 120   | 330   | 397    | 167    | 167     | 321   | 536    |
| 향부자 | 109    | 573   | 619   | 99     | 99     | 560     | 555   | 109    |
| 황 기 | 727    | 679   | 260   | 1,764  | 857    | 733     | 282   | 2,071  |
| 황 금 | 33     | 32    | 342   | 107    | 90     | 89      | 348   | 309    |
| 기 타 | 2,520  | 2,061 |       | 11,481 | 2,093  | 1,827.3 |       | 9,895  |
| 계   | 11,608 | 9,230 |       | 44,703 | 11,361 | 9,825   |       | 44,821 |

**[참고 2] 약용작물 주요생산지 현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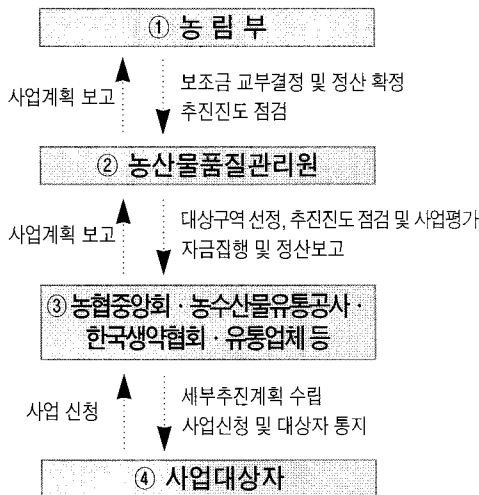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톤)

| 품명  | '04생산량 | 주요 생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당 귀 | 3,523  | 강원(평창·강릉·정선), 충남(태안), 경북(봉화·울진·영주) |
| 천 궁 | 2,327  | 강원(평창), 경북(영양·청송·울릉)               |
| 독 활 | 1,034  | 충남(금산), 전북(임실), 경남(통영·남해)          |
| 황 기 | 1,764  | 충북(제천·단양), 강원(정선·영월), 경기(이천·여주·포천) |
| 두 총 | 892    | 충남(공주), 경남(함양), 경북(문경·포항·김천)       |
| 작 약 | 713    | 전남(보성·여수·화순), 경북(의성·영천), 전북(임실)    |
| 향부자 | 619    | 경북(고령) 오미자 1,209 강원(인제), 전북(장수)    |

|     |        |  |
|-----|--------|--|
| 하수오 | 397    | 경북(영주·봉화·영양), 강원(영월·평창)  |
| 구기자 | 453    | 충남(청양), 전남(진도)   |
| 지 황 | 432    | 전북(정읍), 충남(금산), 경북(안동·예천·군위)   |
| 산수유 | 469    | 전남(구례), 경북(의성)   |
| 천 마 | 742    | 경기(파주), 경북(영양·상주)  |
| 강 활 | 320    | 강원(평창·정선), 경북(봉화)  |
| 황 금 | 107    | 전남(여수·고흥)  |
| 맥문동 | 253    | 충남(청양), 경남(밀양)   |
| 택 사 | 551    | 경북(상주), 전남(순천·신안·구례)   |
| 치 자 | 135    | 경남(거제), 전남(완도)   |
| 방 풍 | 108    | 전남(여수·장흥), 전북(부안·고창)   |
| 백 지 | 141    | 전남(장흥), 경북(영주·안동·영양)   |
| 시 호 | 62     | 경북(영천·의성), 전남(여수·고흥)   |
| 목 단 | 14     | 전남(고흥·화순)  |
| 백 출 | 2.4    | 경북(영주·안동·영양), 강원(평창)   |
| 기 타 | 28,436 | 강원(평창·정선), 충북(제천), 충남(금산·청양), 전북(진안), 전남(여수·순천), 경북(영양·안동·영주·봉화), 경남(진주), 제주 |
| 계   | 44,703 |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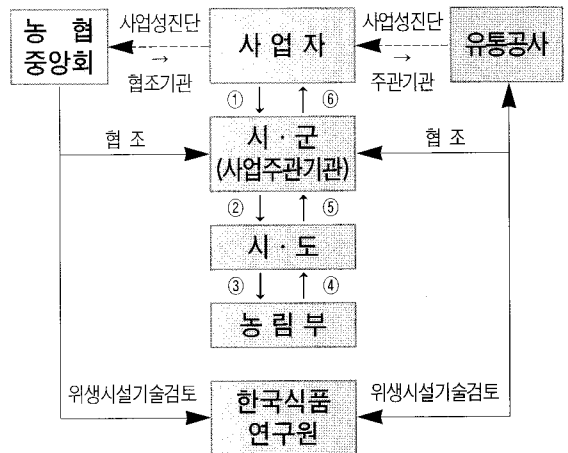
**【참고 4】 GAP사업 시행 체계**

1. GAP 도입 시범사업



- ▶ ① 기본계획 수립, 사업추진 점검
- ② 세부사업계획 수립, 사업확정, 사업추진 지도·감독
- ③ 세부추진계획 수립, 사업신청
- ④ 세부사업계획 수립, 사업확정, 사업추진 지도·감독

2. GAP 위생시설·생산기반 지원 (지원대상자 선정절차)



- ▶ ① 사업신청
- ② 대상자 심사·추천
- ③ 대상자 심사 및 우선순위 확정(사업성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사업비 조정)
- ④ 대상자 확정통지
- ⑤·⑥ 대상자 통지